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의 안 번 호	1608
------------	------

제출연월일 : 2013년 11월 13일
제출자 : 충주시장

2013년 10월 24일 충주시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유

1. 위 조례안은 주택건설 활성화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 소형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통한 서민주거공간 확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러나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일조권 침해와 사생활 보호 등으로 인한 잦은 갈등과 분쟁이 예상되며,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이미지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3. 이에 대해 시민과 학계에서는 서명을 통해 재의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 및 여론조사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충주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소형아파트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5. 충주시는 많은 시민들의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 쾌적한 주거생활을 통한 행복추구권 등 공익적 측면을 감안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1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이송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합니다.

붙임 :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